

- 성북구 장위동 219-223번지 일대 -
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장위동 219-223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 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[(붙임2~4) 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철회 동의서]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한 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주민신청(주민→區)전까지 제출, 반대의사가 있는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구 역 계 : 장위동 219-223 일대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 및 신속통합기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
○ 성 명 : 김옥수

○ 연락처 : 010-3619-7811 (사무실 : 02-919-4016)

※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성명 및 연락처 공개)에 동의함

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
-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.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장위동 219-223번지 일대 제 18 호
번호부여일자	2025. 01. 08.
확인(인)	성북구청장(인)

4. 공개 장소

○ 성북구 홈페이지(www.sb.go.kr) > 구정소식 > 새소식

○ 번호부여 신청구역인 장위1동주민센터 게시판

5. 기타 안내사항

-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제반 업무만 수행하며, ‘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’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장위동 219-22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‘입안요청 동의서’는 추진주체에 발급된 동의서(붙임2)에 검인된 동의서만 유효하며, 입안요청(대표 신청인 → 區) 시 제출한 동의서만 인정됩니다.
- 필지 또는 건축물, 지상권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되, 공유자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도 동의로 처리 가능합니다.

※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/4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

-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,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 (區→市)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
- 후보지로 선정,미선정 및 보류된 구역은 건축허가등 제한구역으로 지정됨

구 분	권리산정기준일 지정 (지분쪼개기 방지)	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(갭투자 등 방지)	건축허가 제한 (분양권없는 건축행위, 지분쪼개기 방지)
후보지 선정구역	후보지 추천일 또는 별도 區요청일	후보지 발표일 기준	후보지 발표일 기준
후보지 미선정구역	-	-	후보지 발표일 기준

-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